

감정평가서

건명	주식회사 한빛주택종합건설 소유물건 (2024타경137311)
의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성희
감정서번호	1-240930-2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감정평가법인 태백



우)06596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4길 31, 3층(서초동, 태백빌딩)

TEL. 02-6401-7923 FAX. 02-6442-7923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정명현

정명현



(주)감정평가법인 태백 대표이사 정명현



(서명또는인)

감정평가액	칠십육억구천삼백오십육만사천칠백원정(₩7,693,564,700.-)					
의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성희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4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한빛주택종합건설 (2024타경137311)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 표 시 근 거	귀제시목록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4.10.04	2024.10.02 ~ 2024.10.04	2024.10.04	
감 정 평 가 내 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²)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520.8	토지	520.8	-	5,455,624,000
	건물	1,083.75	건물	1,083.75	-	2,235,028,200
	제시외물건	(9.75)	제시외물건	9.75	-	2,912,500
합계						₩7,693,564,700
심사 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이동수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 일련번호 1), 2)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서울도림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일련번호 3)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양화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의뢰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함.

나.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대상물건 감정평가시 의뢰인으로부터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제시 받지 아니하였음.

3.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근거 법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따라 감정평가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11조(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제15조(건물의 감정평가)

-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 원가법을 적용해야 한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1) 토지

대상물건 토지는 조성, 매립지, 개간지 등 최근에 개량된 토지가 아니므로 원가방식의 적용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토지만의 임대사례를 포착하는 것이 어렵고 토지와 건물은 일체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익방식의 적용 역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대상물건 평가대상 토지는 비교방식으로 평가하였음. 따라서 대상물건 토지의 평가는 상기 규정에 따라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다른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토지가격을 결정하였음.

2) 건물

대상물건 건물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거래대상이 되지 않는 바 비교방식은 적절하지 아니하며, 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익방식 역시 적용하기가 적절치 아니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어 다른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는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따라서 대상물건 건물은 상기 규정에 따른 주된 방법으로서 그 구조, 용재, 현상, 시공상태, 관리 및 이용상태, 유용성, 부대설비, 경과년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음.

3) 제시외 물건

제시외 물건은 구조·용재·시공의 정도·관리 및 이용·상태·부대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가법으로 평가하되, 면적사정은 개략적인 실측에 의거하였으며 감가수정은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하였음.

4. 기준시점 등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 기준시점은 의뢰인으로부터 별도의 제시가 없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4년 10월 04일로 함.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2024년 10월 02일 ~ 2024년 10월 04일)를 통하여 대상물건의 이용상황과 공부와의 일치여부 및 지가수준을 확인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대상물건의 확정

가. 토지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면적 (㎡)	사정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원/㎡) 2024년	비고
1)	신길동 319-55	142	142	대	2종일주	주상용	중로한면	부정형 평 지	5,166,000	-
2)	신길동 319-10	192	192	대	2종일주	주상용	중로한면	세장형 평 지	5,320,000	-
3)	목동 536-2	186.8	186.8	대	2종일주	주상용	세로(가)	사다리 평 지	3,800,000	-
합계	-	520.8	520.8	-	-	-	-	-	-	-

나. 건물

일련 번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9-5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65길 10)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용도	단독(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가)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층수 (지하/지상)	사용승인일	증축일
	73.52	51.77	317.77	174.86	-1/4	2021.07.12	-
일련 번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9-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65길 10-1)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용도	단독(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나)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층수 (지하/지상)	사용승인일	증축일
	113.88	59.31	425.48	169.27	-1/4	2021.07.12	-
일련 번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53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6가길 14-6)					
	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용도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율(%)	층수 (지하/지상)	사용승인일	증축일
	92.88	49.72	310.74	166.35	-/4	2019.05.1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그 밖의 사항

- 대상물건 건물은 공부와의 물적 동일성이 인정됨.
- 대상물건은 수차례 현장조사 하였으나, 폐문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건축물현황도 및 외부관측, 탐문조사, 대상물건 담보평가사례 등을 통해 내부구조 조사하였으며, 귀 법원의 제시목록에 의거하여 표준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 하시기 바람.
- 대상물건 평가시 인용한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등은 개인정보보호 관계로 일부는 ** 표시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대상물건의 위치확인은 일반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및 출입구 표시부분으로 확인하였음.
- 대상물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상황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기타 관련 공부서류, 감정평가사례 등에 의거 작성하였음.
- 대상물건 일련번호 가)~다) 건물 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등재 되어있으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 중인 바, 귀 법원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 대상물건 일련번호 가)~다) 건물에는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제시외 물건(기호㉠~㉡) 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현황 ·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가. 개요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나.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중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 상황·지목·주위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하며,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였음.

(공시기준일 : 2024.01.01)

구분	소재지	면적 (㎡)	지목	용도 지역	이용 상황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표준지 A	신길동 268-13	176	대	2종일주	주상용	소로한면	부정형 평 지	4,604,000
표준지 B	목동 537-15	163.4	대	2종일주	다세대	세로(가)	가장형 평 지	3,725,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2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할 수 있으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에 대한 가격 변동률로서 국지적인 특성을 보이는 지가변동을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지역의 지가 변동 추이를 보다 적절히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시점수정치로 결정하였음. (미발표시 직전월 지가변동률 적용)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보정치(배)	비 고
표준지 A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지역'	2024.01.01~2024.10.04	2.145	1.02145	2024년 09월 연장적용
표준지 B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지역'	2024.01.01~2024.10.04	1.872	1.01872	2024년 09월 연장적용

라. 지역요인 비교

결정 의견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일련번호 1),2)/표준지A]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대상/표준지A)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10	대상물건과 표준지 비교시 가로의 폭 등에서 우세함.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1.00	유사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경 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1.00	유사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 너비,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형상, 깊이 등	1.00	유사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유사함.
		입체이용 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1.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주택지대[일련번호 3]/표준지B]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대상/표준지B)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0	유사함.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1.00	유사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경 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1.00	유사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 너비,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형상, 깊이 등	1.00	유사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유사함.
		입체이용 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그 밖의 요인의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표준지공시지가는 과세, 보상 및 일반거래 목적 평가시 산정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으로서, 다양한 목적에 활용되는 바, 실제 시장가치와는 다소 차이를 보임. 따라서 적정가격 산정을 위해 보정단계를 거치게 되며,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내 유사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사례, 평가사례 및 정상적인 지가수준을 참작함으로써, 적절한 감정평가를 하고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5호, 대법원판례 “2003다38207판결 (2004.5.14.선고)”, “2002두5054(2003.7.25.선고)” 등에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

2)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가) 평가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지목	면적 (㎡)	용도 지역	이용 상황	감정 평가 목적	기준시점	토지단가 (원/㎡)	기준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원/㎡)	격차율
①	목동 527-*	대	263.7	2종일주	주상용	일반거래	2023.07.03	12,200,000	6,723,000	1.81
②	신길동 158-*	대	314	2종일주	주상용	일반거래	2022.10.05	11,400,000	4,920,000	2.32
③	신길동 318-*	대	311	2종일주	주상용	담보	2024.03.27	10,700,000	4,604,000	2.32
④	목동 528-*	대	221	2종일주	단독주택	일반거래	2024.03.19	10,500,000	4,685,000	2.2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거래사례 내역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 등)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 지역	토지면적 (㎡)	이용 상황	거래금액 (원)	토지거래단가 (원/㎡)	거래시점 (계약일기준)	거래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원/㎡)
㉠	신길동 314-*	대	2종일주	122	단독주택	1,200,000,000 (건물포함)	약 9,220,000	2022.02.17	3,815,000
비 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 개요 : 벽돌구조(사용승인일 : 1994.07.28), 면적 : 156.82㎡ ■ 토지 추정단가 : $\{[1,200,000,000\text{원} - (1,200,000\text{원}/\text{㎡} \times 18/45 \times 156.82\text{㎡})] / 122\text{㎡}\} = 9,220,000\text{원}/\text{㎡}$								
㉡	목동 530-*	대	2종일주	112	주거나지	1,200,000,000 (토지만거래)	약 10,700,000	2023.02.14	6,716,000
비 고	거래 이후 멸실됨.								
㉢	신길동 320-*	대	2종일주	173	주상용	2,300,000,000 (건물포함)	약 12,000,000	2022.07.12	5,874,000
㉣	목동 654-*	대	2종일주	162	단독주택	1,615,000,000 (건물포함)	약 9,310,000	2022.04.19	3,724,000
비 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 개요 : 벽돌구조(사용승인일 : 1993.04.21), 면적 : 282.51㎡ ■ 토지 추정단가 : $\{[1,615,000,000\text{원} - (1,000,000\text{원}/\text{㎡} \times 17/45 \times 282.51\text{㎡})] / 162\text{㎡}\} = 9,310,000\text{원}/\text{㎡}$								
㉤	목동 499-*	대	2종일주	153	주거나지	1,617,000,000 (토지만거래)	약 10,600,000	2022.06.08	4,380,000
비 고	거래 이후 멸실됨.								
㉥	목동 499-*	대	2종일주	150.5	주거나지	1,592,500,000 (토지만거래)	약 10,600,000	2022.06.08	4,380,000
비 고	거래 이후 멸실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인근지역 지가수준

용도지역	용도	도로조건	지가수준	조사처
2종일주	주상용	중로변	@11,000,000원/m ² ~ @12,000,000원/m ² 내외 수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2종일주	주상용	세로변	@9,000,000원/m ² ~ @10,000,000원/m ² 내외 수준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4) 경매낙찰가율(1년간 평균낙찰가율)

(출처: 부동산태인)

■ 서울 영등포 신길동										
지역통계		서울			영등포			신길동		
기간	용도	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낙찰건수
1년간 평균	다가구	80.67%	81.25%	97	69.65%	70.39%	10	67.81%	67.73%	5
	대지	64.84%	66.79%	89	73.27%	60.36%	6	69.05%	73.36%	3
6개월 평균	다가구	82.44%	82.81%	58	71.69%	73.03%	5	66.87%	66.83%	2
	대지	63.07%	66.43%	45	72.54%	53.56%	5	67.67%	62.94%	2

■ 서울 양천구 목동										
지역통계		서울			양천구			목동		
기간	용도	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평균낙찰가율	낙찰건수
1년간 평균	다가구	80.67%	81.25%	97	80.74%	80.74%	1	0.00%	0.00%	0
	대지	64.84%	66.79%	89	52.88%	52.88%	1	52.88%	52.88%	1
6개월 평균	다가구	82.44%	82.81%	58	0.00%	0.00%	0	0.00%	0.00%	0
	대지	63.07%	66.43%	45	52.88%	52.88%	1	52.88%	52.88%	1

5)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결정

가) 산정방법

감정평가 기준시점에서 사례(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등)를 기준으로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등을 거쳐 산출한 표준지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에 시점수정을 거친 기준시점 표준지가격을 비교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함.

$$\text{■ 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 평가}) \text{ 사례가격}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text{표준지공시지가 시점수정}) \text{ 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1) 비교사례의 선정

선정 비교사례	거래사례 ㉠,㉡
비교사례 선정의견	대상물건이 속한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에 소재하고 용도지역, 이용 상황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제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사례(사정이 개입되지 아니한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중 선정하였음.

(2) 사정보정

결정 의견	선정된 비교사례에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
사정보정 비교치	1.000

(3) 시점수정

(미발표시 직전월 지가변동률 적용)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보정치(배)	비 고
비교사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지역'	2022.02.17~2024.10.04	5.586	1.05586	2024년 09월 연장적용
비교사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지역'	2023.02.14~2024.10.04	2.816	1.02816	2024년 09월 연장적용

(4) 지역요인 비교

결정 의견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와 인근지역 내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동일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표준지A/비교사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표준지A /비교사례㉠)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5	표준지와 사례 비교시 가로의 폭 등에서 우세함.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1.00	유사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경 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1.00	유사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 너비,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형상, 깊이 등	1.00	유사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유사함.
		입체이용 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1.05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주택지대[표준지B/비교사례㉠]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표준지B /비교사례㉠)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0.95	표준지와 사례 비교시 가로의 폭 등에서 열세함.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0.88	표준지와 사례 비교시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에서 열세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공공 및 편의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경 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1.00	유사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 너비,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형상, 깊이 등	1.00	유사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유사함.
		입체이용 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0.83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사례기준 표준지평가

구분	비교사례	비교사례 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단가(원/㎡)
표준지 A	㉠	9,220,000	1.000	1.05586	1.000	1.050	10,221,781
표준지 B	㉡	10,700,000	1.000	1.02816	1.000	0.836	9,197,097

(7)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단가	=	10,221,781	=	2.174
표준지공시지가A×시점수정	=	4,604,000 × 1.02145 = 4,702,756		
비교사례㉡ 기준 비교표준지단가	=	9,197,097	=	2.424
표준지공시지가B×시점수정	=	3,725,000 × 1.01872 = 3,794,732		

다)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보 정 내 용	표준지	결정 보정치
인근 감정평가사례, 거래사례, 인근지역 지가수준, 경매낙찰가율 및 대상토지의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	A	2.17
	B	2.42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 번호	표준지 기호	표준지공시지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2)	A	4,604,000	1.02145	1.000	1.100	2.17	11,225,478	11,200,000	-
3)	B	3,725,000	1.01872	1.000	1.000	2.42	9,183,251	9,18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가. 거래사례 선정

1) 선정기준

선정 비교사례	거래사례 ㉮,㉯
비교사례 선정의견	인근지역내 대상물건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유사하고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제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실거래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되,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으로서 비교가능성이 높아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적용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음.

2) 거래사례 내역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 등)

기호	소재지	지목	용도 지역	토지면적 (㎡)	이용 상황	거래금액 (원)	토지거래 단가 (원/㎡)	거래시점 (계약일기준)	거래시점의 개별공시지가 (원/㎡)
㉮	신길동 320-*	대	2종일주	173	주상용	2,300,000,000 (건물포함)	약 12,000,000	2022.07.12	5,874,000
비고	<토지단가 산출개요> ■ 건물 개요 : 철근콘크리트구조(사용승인일 : 1991.07.29), 면적 : 344.84㎡ ■ 토지 추정단가 : $\{[2,300,000,000\text{원} - (1,600,000\text{원}/\text{㎡} \times 20/50 \times 344.84\text{㎡})] / 173\text{㎡}\} \approx 12,000,000\text{원}/\text{㎡}$								
㉯	목동 654-*	대	2종일주	162	주거나지	1,615,000,000 (건물포함)	약 9,310,000	2022.04.19	3,724,000
비고	거래 이후 멸실됨.								

나. 사정보정

결정 의견	선정된 비교사례에는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
사정보정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시점수정

(미발표시 직전월 지가변동률 적용)

구분	대상지역	기 간	지가변동률(%)	보정치(배)	비 고
비교사례 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지역'	2022.07.12~2024.10.04	3.617	1.03617	2024년 09월 연장적용
비교사례 ㊹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지역'	2022.04.19~2024.10.04	3.828	1.03828	2024년 09월 연장적용

라. 지역요인 비교

결정 의견	대상토지와 비교사례는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
지역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 주택지대[일련번호 1),2)/비교사례㉔]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대상 /비교사례㉔)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0	유사함.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1.00	유사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경 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1.00	유사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 너비,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형상, 깊이 등	0.96	대상물건과 사례 비교시 접면도로 상태(각지) 등에서 열세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유사함.
		입체이용 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0.96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주택지대[일련번호 3)/비교사례㉔]

조 건	항 목	세 항 목	격 차 율 (대상 /비교사례㉔)	비 고
가로 조건	가로의 폭, 구조 등의 상태	폭, 포장, 계통 및 연속성 등	1.00	유사함.
접근 조건	교통시설과의 거리	인근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1.00	유사함.
	상가와의 접근성	인근 상가와의 거리 및 편의성 등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유치원,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거리 및 편의성 등		
환경 조건	일조 등 자연환경	일조, 통풍, 조망, 경관, 지반, 지질 등	1.00	유사함.
	인근환경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인근 토지 이용상황과의 적합성 등		
	공급 및 처리시설의 상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위험 및 혐오시설 등	변전소, 가스탱크, 오수처리장 등의 유무 등		
획지 조건	면적, 접면 너비, 형상 등	면적, 접면너비, 형상, 깊이 등	1.00	유사함.
	방위, 고저 등	방위, 고저, 경사지 등		
	접면도로 상태	각지, 2면획지, 3면획지 등		
행정적 조건	행정상의 규제정도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1.00	유사함.
		입체이용 제한 등		
기타 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1.00	유사함.
개별요인 비교치			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

일련번호	비교사례 기호	비교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비고
1),2)	㉔	12,000,000	1.000	1.03617	1.000	0.960	11,936,678	11,900,000	-
3)	㉕	9,310,000	1.000	1.03828	1.000	1.000	9,666,387	9,670,000	-

3. 시산가액 조정 및 토지 감정평가액의 결정

가. 시산가액

일련번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원/㎡)	결정단가 (원/㎡)
1),2)	11,200,000	11,900,000	11,200,000
3)	9,180,000	9,670,000	9,180,000

나. 시산가액의 조정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

1) 시산가액의 조정 및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의견

상기와 같이 산출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단가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단가가 상호간에 유사하여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산출된 시산가액을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2) 대상토지의 감정평가액

일련번호	소재지	공부면적 (㎡)	사정면적 (㎡)	토지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9-55	142	142	11,200,000	1,590,400,000	-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9-10	192	192	11,200,000	2,150,400,000	-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536-2	186.8	186.8	9,180,000	1,714,824,000	-
합 계		520.8	520.8	-	5,455,624,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Ⅲ. 대상건물의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개요

대상건물 감정평가액의 산출은 건축물의 구조, 시공상태, 사용자재, 마감상태 및 부대시설 등을 종합 참작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되, 건물만의 거래사례 포착이 어려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원가법이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대상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하여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음.

산 식	건물 적용단가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단가) 건물 적산가액 = 적용단가 × 건물 면적
------------	--

2. 대상건물의 개황

일련 번호	주 용 도	구 조	연면적(m ²)	비고(층수)
가)	단독(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철근콘크리트구조	317.77	-1/4층
나)	단독(다중)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철근콘크리트구조	425.48	-1/4층
다)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310.74	-/4층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재조달원가 결정

건물의 재조달원가(표준단가+보정단가)는 부동산연구원 2023년 01월을 참고하되, 대상건물의 시공의 정도, 관리 및 이용상태, 유지.보수의 정도,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음.

가. 부동산연구원 2023년 01월

분류번호	용도	구조	급수	표준단가 (원/m ²)	내용년수
01-02-05-09	고급주택	철근콘크리트조/평지붕	3	2,569,000	50 (45 ~ 55)
01-01-05-07	일반주택	철근콘크리트조/박공지붕 /오지기와	2	2,055,000	50 (45 ~ 55)

나. 부대설비 내역

부대설비 보정이란 상기 건물표준단가와 대상건물이 갖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수준 및 마감재 등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대상건물의 적정 재조달원가를 산정함.

보정 항목	비고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소화전 설비, 도시가스 설비, 난방 설비 등	표준단가에 포함평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다. 재조달원가 결정

일련 번호	층	공부상 용도	재조달원가 (원/㎡)	시공의 정도 및 관리상태	비 고
가)	지1층	단독(다중)주택	1,900,000	중	-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3호	1,900,000	중	현황 '주택'
	2층	단독(다중)주택	2,500,000	중	-
	3층	단독(다중)주택	2,500,000	중	-
	4층	단독(다중)주택	2,500,000	중	-
	옥탑1층	계단실(연면적 제외)	1,200,000	중	-
나)	지1층	단독(다중)주택	1,900,000	중	-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2호	1,900,000	중	현황 '주택'
	2층	단독(다중)주택	2,500,000	중	-
	3층	단독(다중)주택	2,500,000	중	-
	4층	단독(다중)주택	2,500,000	중	-
	옥탑1층	계단실(연면적 제외)	1,200,000	중	-
다)	1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1,900,000	중	현황 '주택'
	2층	다중주택	2,500,000	중	-
	3층	다중주택	2,500,000	중	-
	4층	다중주택	2,500,000	중	-
	옥탑1층	계단실(연면적제외)	1,200,000	중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가수정 및 건물단가의 결정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가치 하락요인 등(감가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함. 본 감정평가에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대상건물의 경제적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하되, 감가수정 방법인 정액법·정률법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 건물에 가장 적합한 방법인 “정액법”으로 감가수정하였음.

일련 번호	층별	재조달원가 (원/㎡)	잔존 내용년수	내용 년수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사용승인일
가)	지1층	1,900,000	47	50	1,780,000	1,780,000	2021.07.12
	1층	1,900,000	47	50	1,786,000	1,780,000	
	2층	2,500,000	47	50	2,350,000	2,350,000	
	3층	2,500,000	47	50	2,350,000	2,350,000	
	4층	2,500,000	47	50	2,350,000	2,350,000	
	옥탑1층	1,200,000	47	50	1,128,000	1,120,000	
나)	지1층	1,900,000	47	50	1,786,000	1,780,000	
	1층	1,900,000	47	50	1,786,000	1,780,000	
	2층	2,500,000	47	50	2,350,000	2,350,000	
	3층	2,500,000	47	50	2,350,000	2,350,000	
	4층	2,500,000	47	50	2,350,000	2,350,000	
	옥탑1층	1,200,000	47	50	1,128,000	1,120,000	
다)	1층	1,900,000	45	50	1,710,000	1,710,000	2019.05.10
	2층	2,500,000	45	50	2,250,000	2,250,000	
	3층	2,500,000	45	50	2,250,000	2,250,000	
	4층	2,500,000	45	50	2,250,000	2,250,000	
	옥탑1층	1,200,000	45	50	1,080,000	1,08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5. 대상건물의 감정평가액

일련 번호	층별	공부 면적(m ²)	사정 면적(m ²)	적용단가 (원/m ²)	감정평가액 (원)	비 고
가)	지1층	69.47	140.65	1,780,000	250,357,000	-
	1층	71.18				현황 '주택'
	2층	59.04	177.12	2,350,000	416,232,000	-
	3층	59.04				-
	4층	59.04				-
		옥탑1층	7.92	7.92	1,120,000	8,870,400
나)	지1층	100.48	205.16	1,780,000	365,184,800	-
	1층	104.68				현황 '주택'
	2층	88.11	220.32	2,350,000	517,752,000	-
	3층	88.11				-
	4층	44.1				-
		옥탑1층	12.18	12.18	1,120,000	13,641,600
다)	1층	86.31	86.31	1,710,000	147,590,100	현황 '주택'
	2층	85.06	224.43	2,250,000	504,967,500	-
	3층	85.06				-
	4층	54.31				-
		옥탑1층	9.66	9.66	1,080,000	10,432,800
합 계		1,083.75	1,083.75	-	2,235,028,2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V.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감정평가액과 원가법에 의한 건물 감정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의 합리성이 인정됨. 대상물건의 특성 등을 종합 참작하고 감정평가목적(경매)을 고려하여 이를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구 분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5,455,624,000	상세내역은 명세표 참조
건 물	2,235,028,200	
제시외 물건 (기호㉠~㉢)	2,912,500	
합 계	7,693,564,700	-

끝.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m ²)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9-55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2	142	11,200,000	1,590,400,000	
가	동 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만산로65길 10	319-55 위지상 루멘비	단독(다중) 주택,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사무소)	철근 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지1층 1층 2층 3층 4층 옥탑1층 (연면적제외)	69.47	140.65	1,780,000	250,357,000	1,900,000 x 47/50 현황 '주택'
					71.18				
					59.04	177.12	2,350,000	416,232,000	2,500,000 x 47/50
					59.04				
					59.04				
					7.92	7.92	1,120,000	8,870,400	1,200,000 x 47/50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m ²)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2	동 소	319-10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92	192	11,200,000	2,150,400,000	
나	동 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만산로65길 10-1	319-10 위지상 루멘 에이	단독(다중) 주택,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사무소)	철근 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지1층 1층 2층 3층 4층 옥탑1층 (연면적제외)	100.48	205.16	1,780,000	365,184,800	1,900,000 x 47/50 현황 '주택'
					104.68				
					88.11	220.32	2,350,000	517,752,000	2,500,000 x 47/50
					88.11				
					44.1				
					12.18	12.18	1,120,000	13,641,600	1,200,000 x 47/50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m ²)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536-2	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86.8	186.8	9,180,000	1,714,824,000	
다	동 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6가길 14-6	536-2 위지상 푸른 주택	다중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철근 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 1층 2층 3층 4층 옥탑1층 (연면적제외)	86.31	86.31	1,710,000	147,590,100	1,900,000 x 45/50 현황 '주택'
					85.06	224.43	2,250,000	504,967,500	2,500,000 x 45/50
					85.06				
					54.31				
					9.66	9.66	1,080,000	10,432,800	1,200,000 x 45/50
	소 계							₩7,690,652,200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m ²)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	[제시외물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마산로65길 10-1	319-10 위지상 루멘 에이	보일러실 (4층소재)	판넬조	(0.5)	0.5	150,000	75,000	
㉡	동 소	동 소	보일러실 (4층소재)	판넬조	(0.5)	0.5	150,000	75,000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6가길 14-6	536-2 위지상 푸른 주택	보일러실 (1층소재)	판넬조	(1.5)	1.5	150,000	225,000	
㉣	동 소	동 소	창고 등 (4층소재)	판넬조	(7.25)	7.25	350,000	2,537,500	
	합 계			이	하	여		₩7,693,564,700.-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일련번호 1), 2)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서울도림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상물건 일련번호 3)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소재 '서울양화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토지, 건물)으로서, 주위는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교육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입지여건 무난한 편임.

(2) 교통상황

대상토지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일련번호 1)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2)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일련번호 3) :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 중임.

(4) 인접 도로상태

일련번호 1), 2) : 공히 대상물건 남측으로 노폭 약 13m~1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련번호 3) : 대상물건 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련번호 1),2) : 공히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2015-05-21),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예외 : 애완 및 방범용 가축)지역경제과 문의), 공공주택지구(서울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교육환경보호구역(세부사항 : 남부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해발165m(지반+건축+옥탑 등),육군
 수도방위사령부(02-524-3146)관할), 과밀억제권역(세부사항 :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문의)임.

일련번호 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강서양천교육청에 반드시 확인 요망),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
 과밀억제권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임.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물건 일련번호 가)~다) 건물에는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와 같이 제시외
 물건(기호㉠~㉡)이 소재하여 개략적인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현황 ·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원가법으로 평가하였음.

(7) 공부와의 차이

없 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후첨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참조 바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중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1) 건물의 구조

일련번호 가), 나) : 공히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서,
 -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 창호 : 하이샷시 등임.

일련번호 다)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4층 건물로서,
 -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 창호 : 하이샷시 등임.

(2) 이용상태

일련번호 가)
 지1층~4층 : 주택 3가구(각)로 이용 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일련번호 나)
 지1층,1층 : 주택 4가구(각)로 이용 중임,
 2층,3층 : 주택 5가구(각)로 이용 중임,
 4층 : 주택 2가구로 이용 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일련번호 다)
 1층 : 주택 4가구로 이용 중임,
 2층,3층 : 주택 5가구(각)로 이용 중임,
 4층 : 주택 3가구로 이용 중임. (후첨 건물개황도 참조)

(3)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 급배수 설비, 소화전 설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도시가스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건물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건물의 구조 | (2) 이용상태 | (3) 설비내역 |
| (4) 부합물 및 증물 | (5) 공부와의 차이 |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4) 부합물 및 증물

없 음.

(5) 공부와의 차이

대상물건 일련번호 가)~다) 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택' 으로 이용 중인 바, 귀 법원 경매 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광역 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광역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일대



상 세 위 치 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19-55 외 1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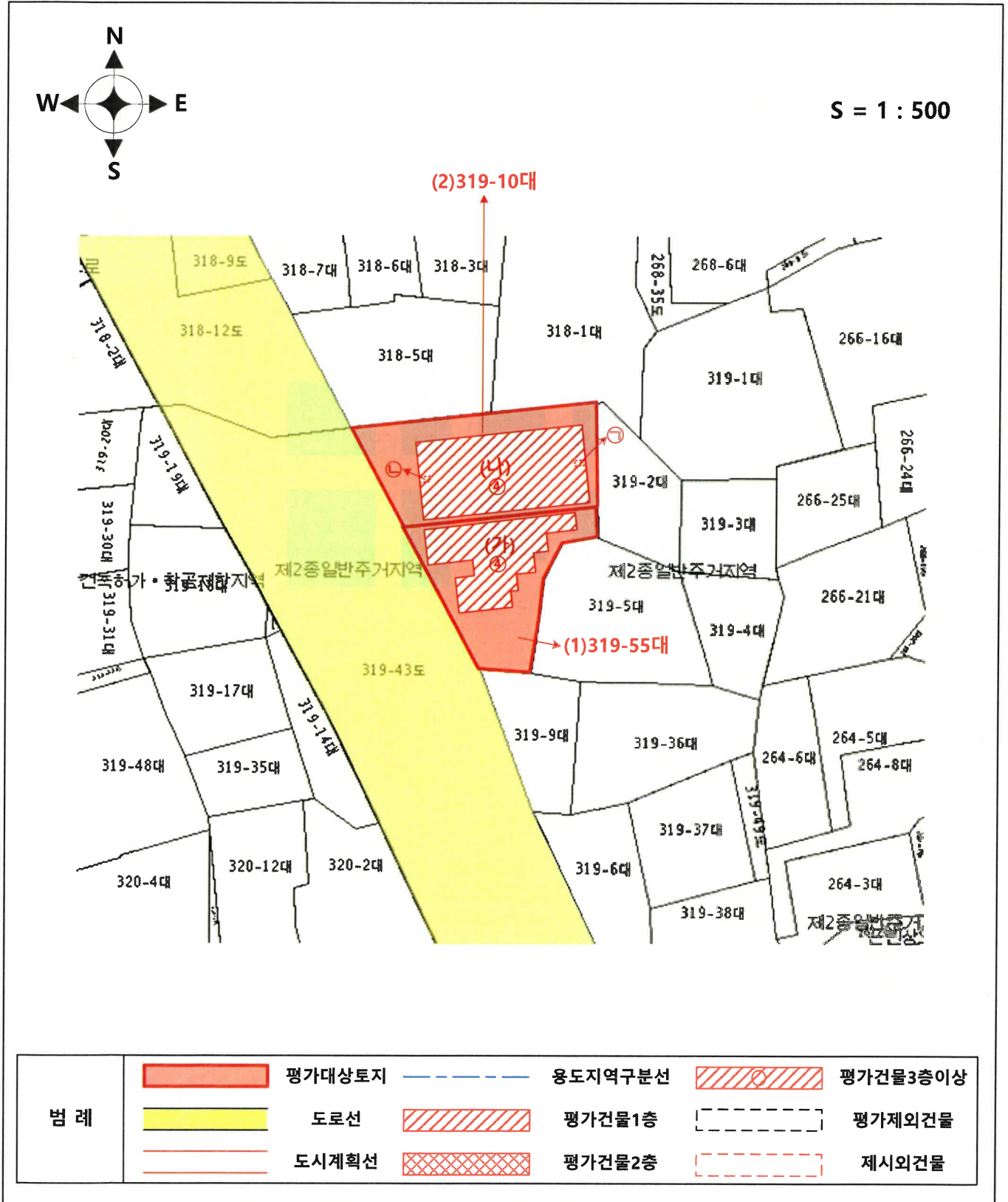
상 세 위 치 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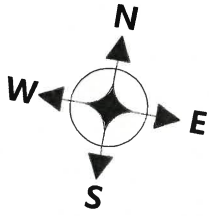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5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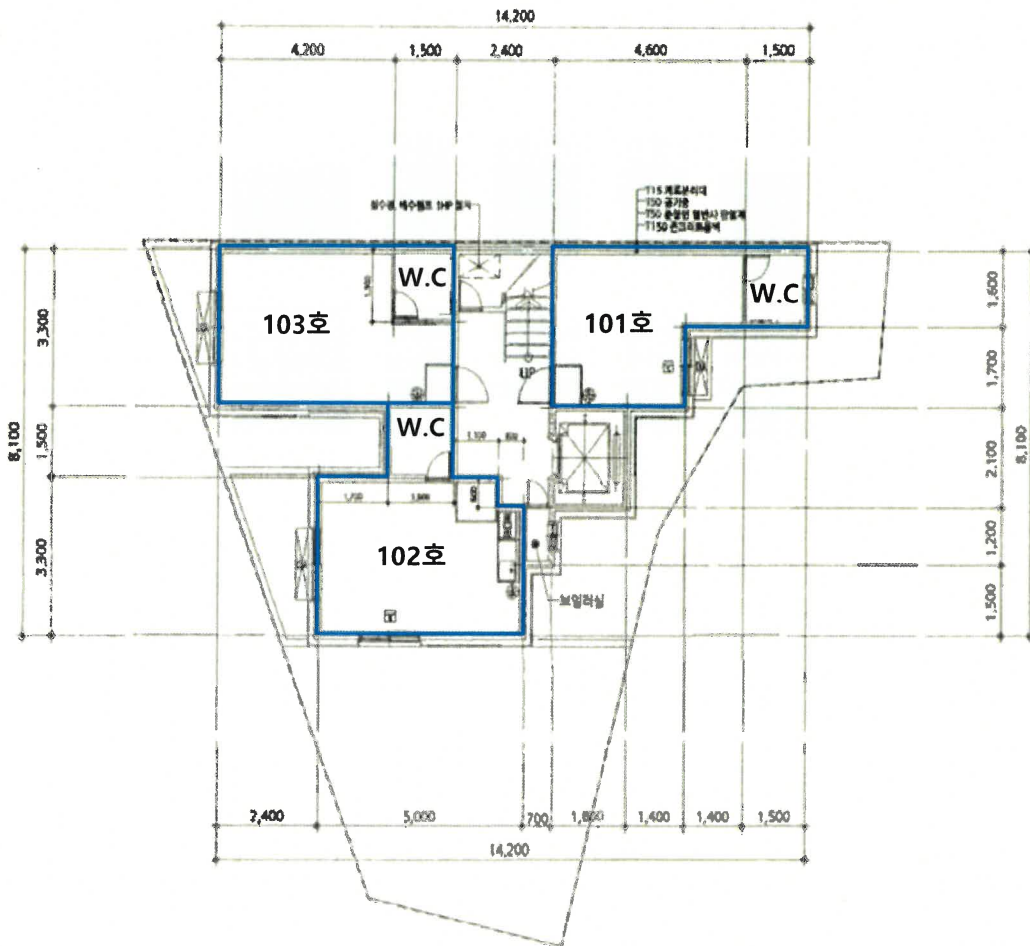
지 적 및 건 물 개 황 도



건 물 개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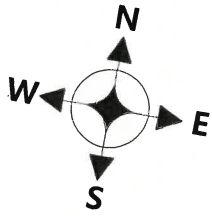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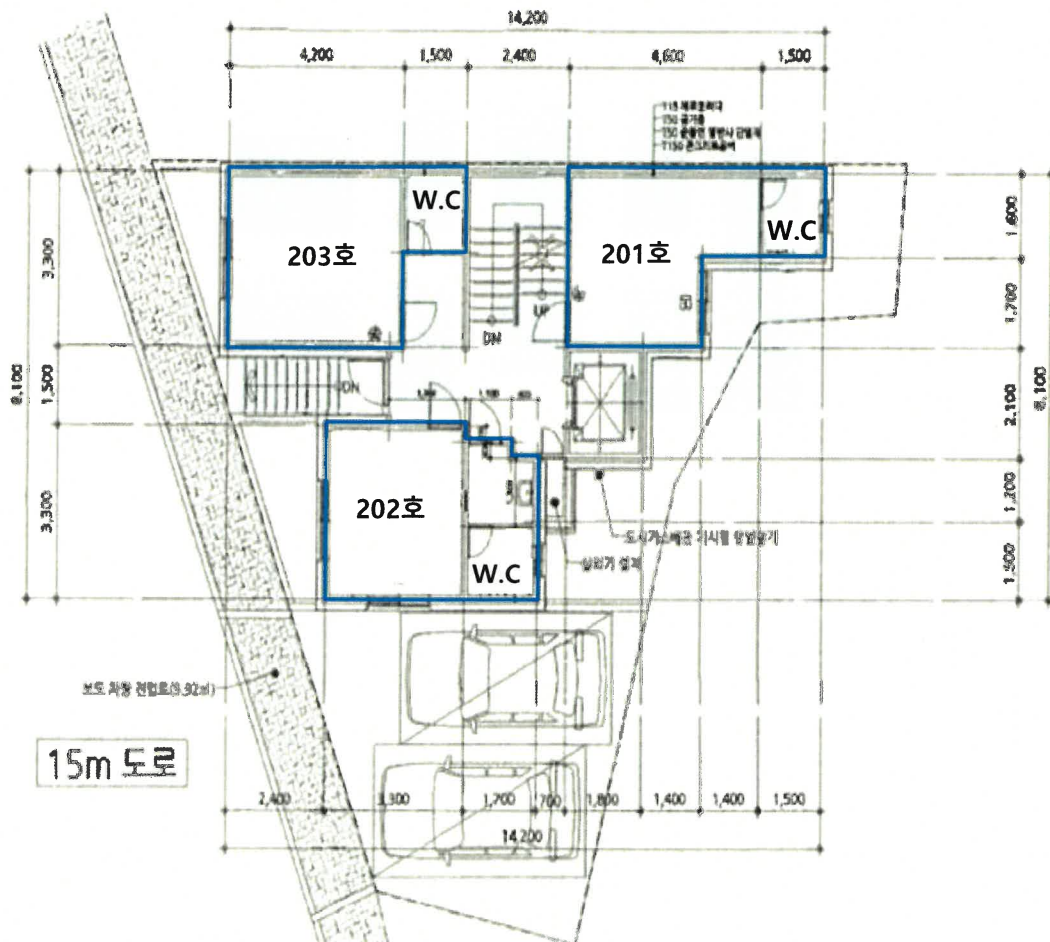
< 일련번호(가) 지1층 >
공부상 면적 69.47㎡

본건 배치도는 건축물 현황도 및 본건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도식화 하였으니 추후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바람.

건 물 개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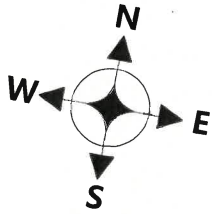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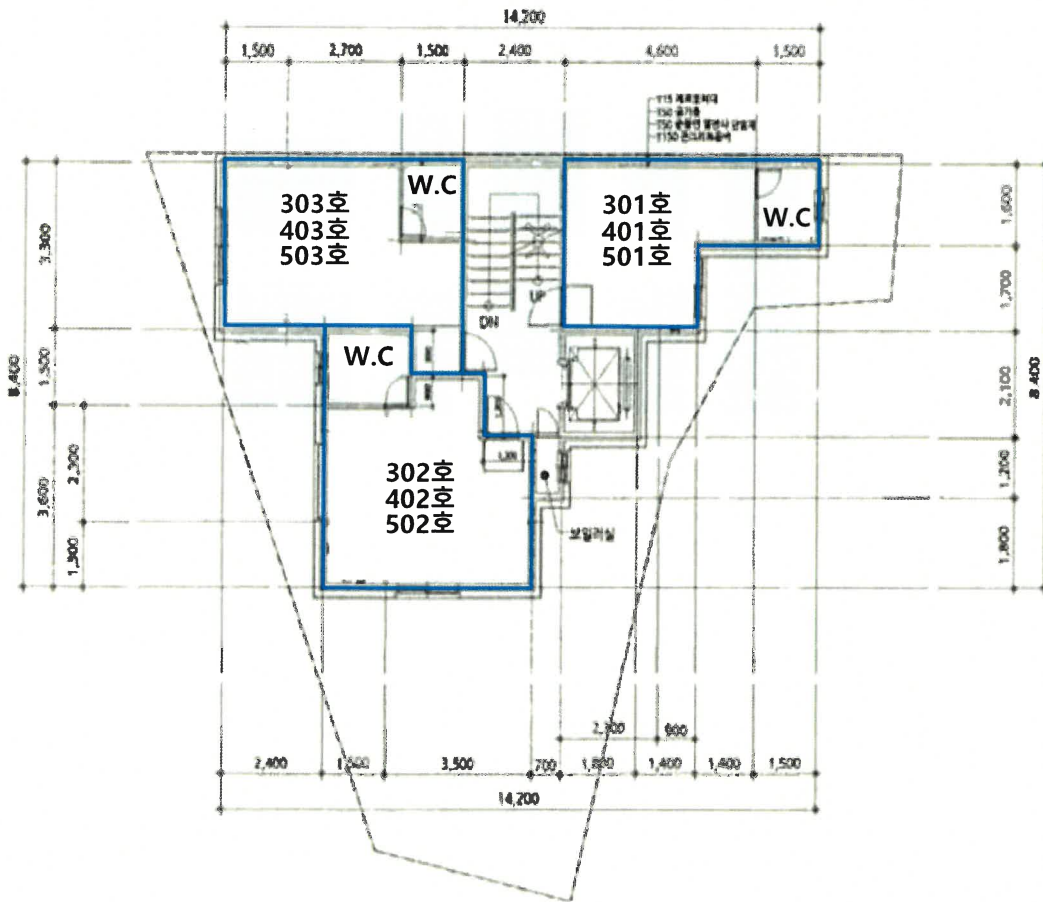
< 일련번호(가) 1층 >
공부상 면적 71.18㎡

본건 배치도는 건축물 현황도 및 본건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도식화 하였으니 추후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바람.

건 물 개 황 도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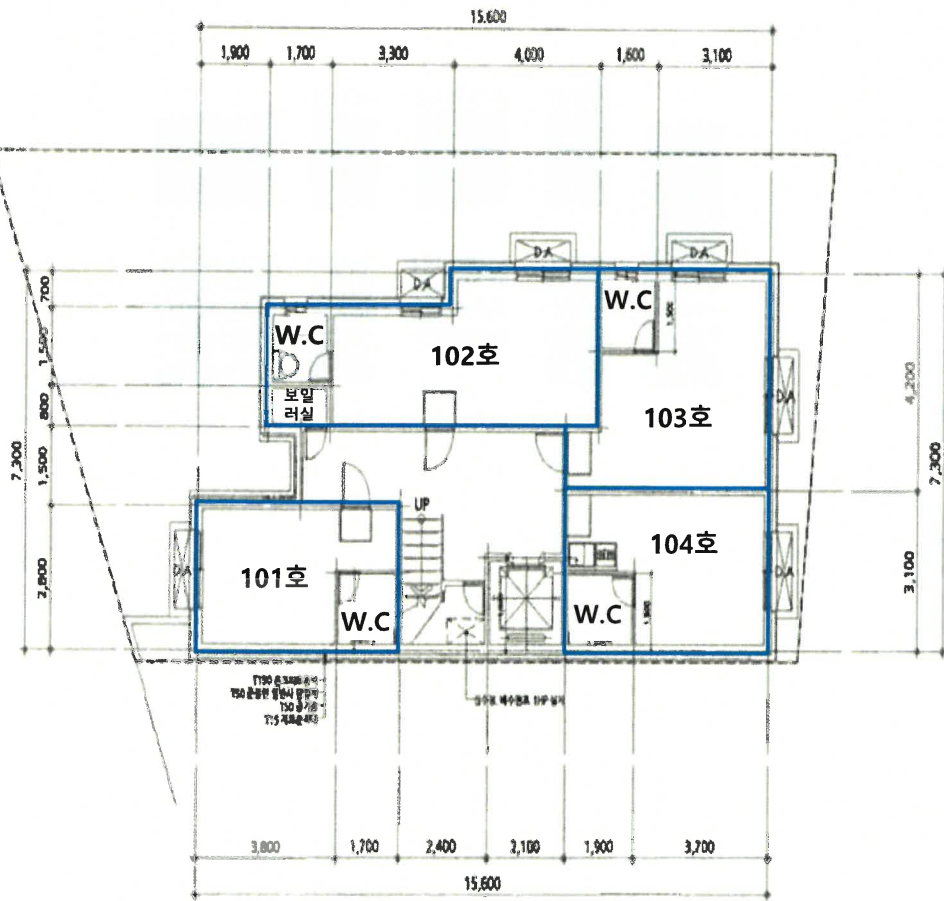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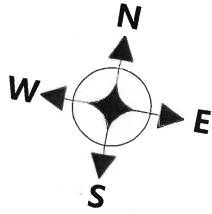


< 일련번호(가) 2~4층 >
공부상 면적 59.04㎡

본건 배치도는 건축물 현황도 및 본건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도식화 하였으니 추후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바람.

건 물 개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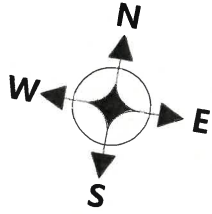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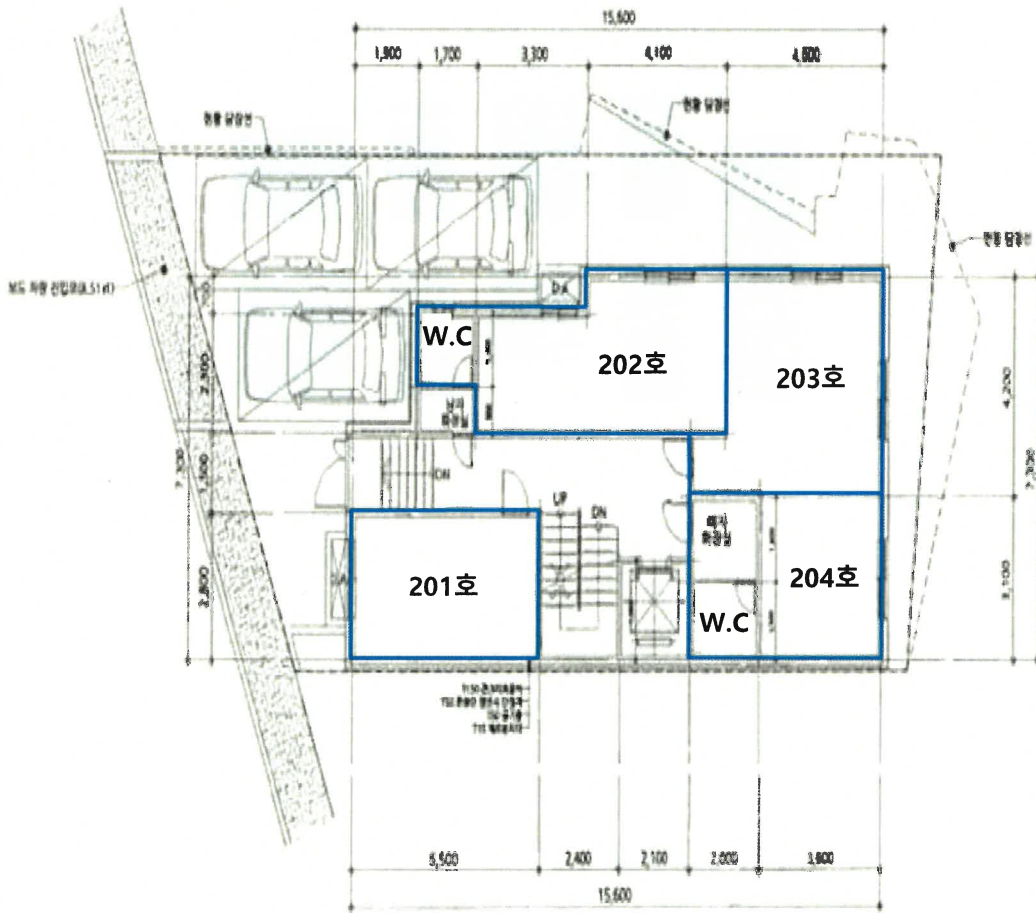
< 일련번호(나) 지1층 >
공부상 면적 100.48㎡

본건 배치도는 건축물 현황도 및 본건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도식화 하였으니 추후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바람.

건 물 개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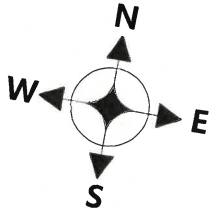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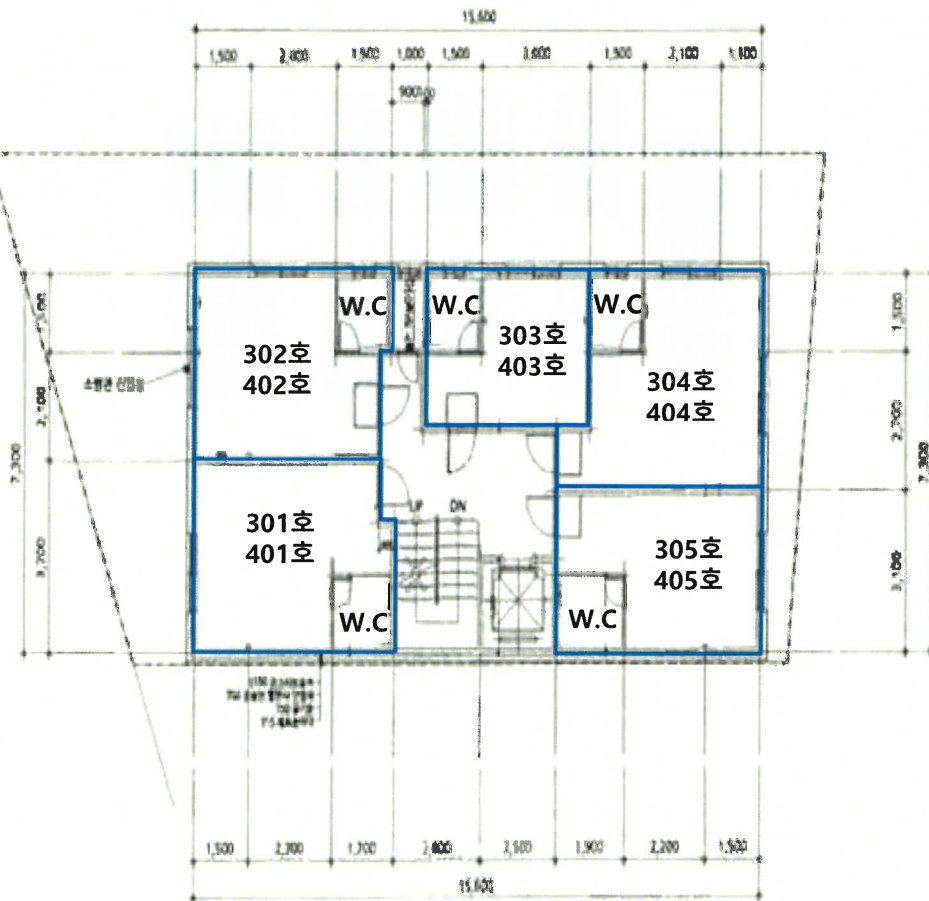
< 일련번호(나) 1층 >
공부상 면적 104.68㎡

본건 배치도는 건축물 현황도 및 본건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도식화 하였으니 추후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바람.

건 물 개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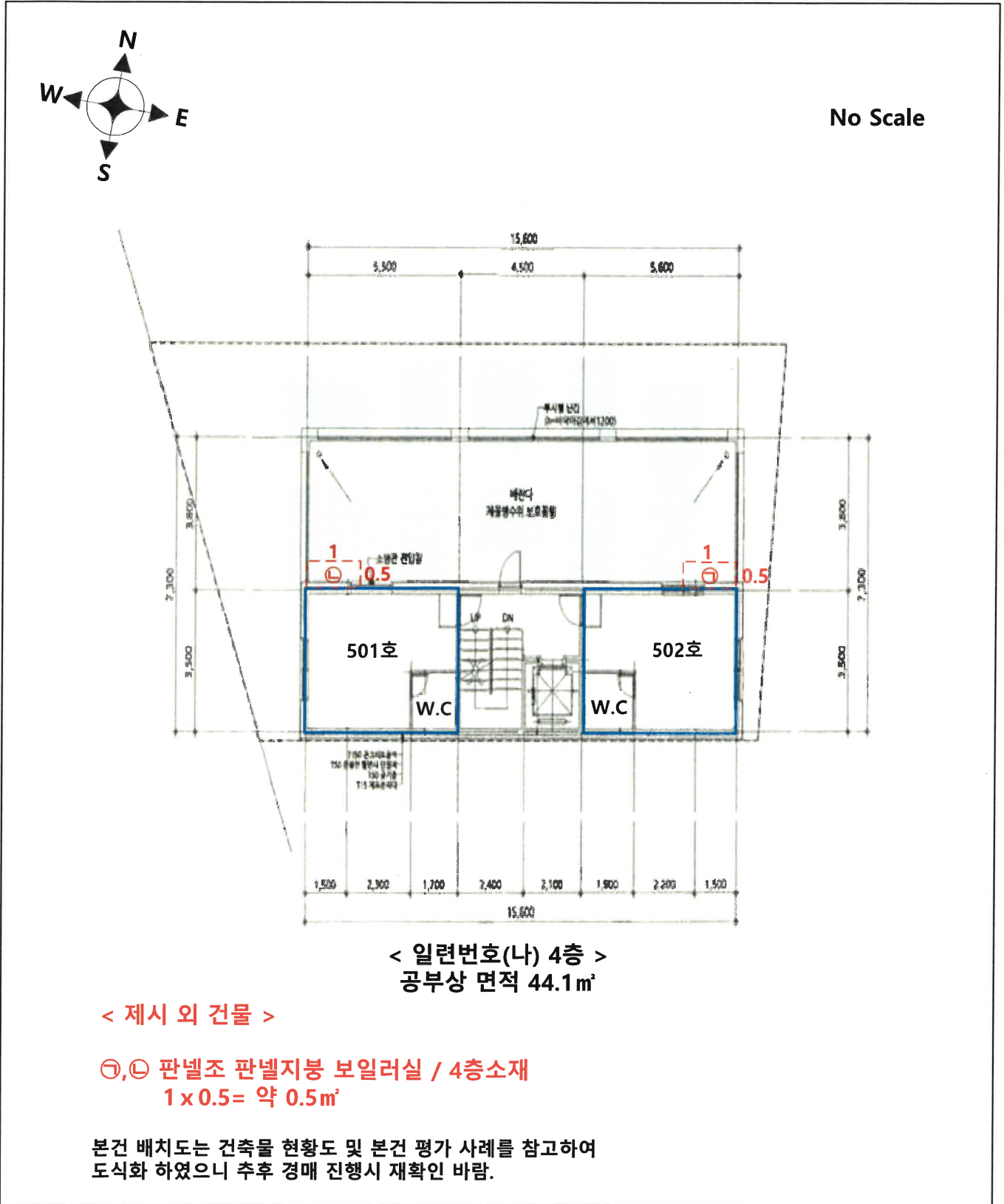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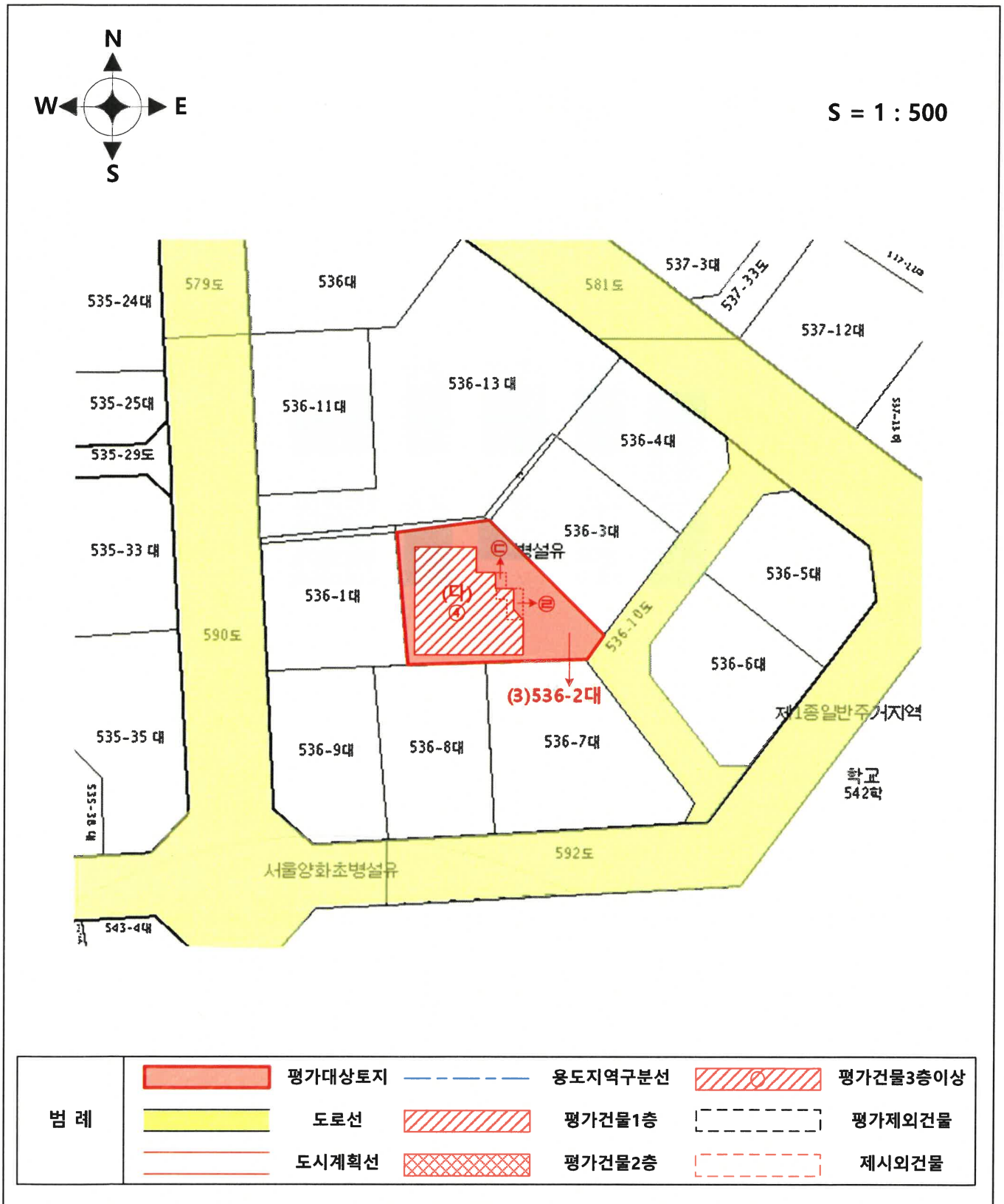
< 일련번호(나) 2~3층 >
공부상 면적 88.11㎡

본건 배치도는 건축물 현황도 및 본건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도식화 하였으니 추후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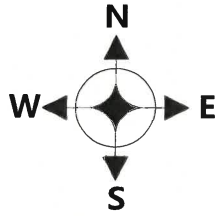
건물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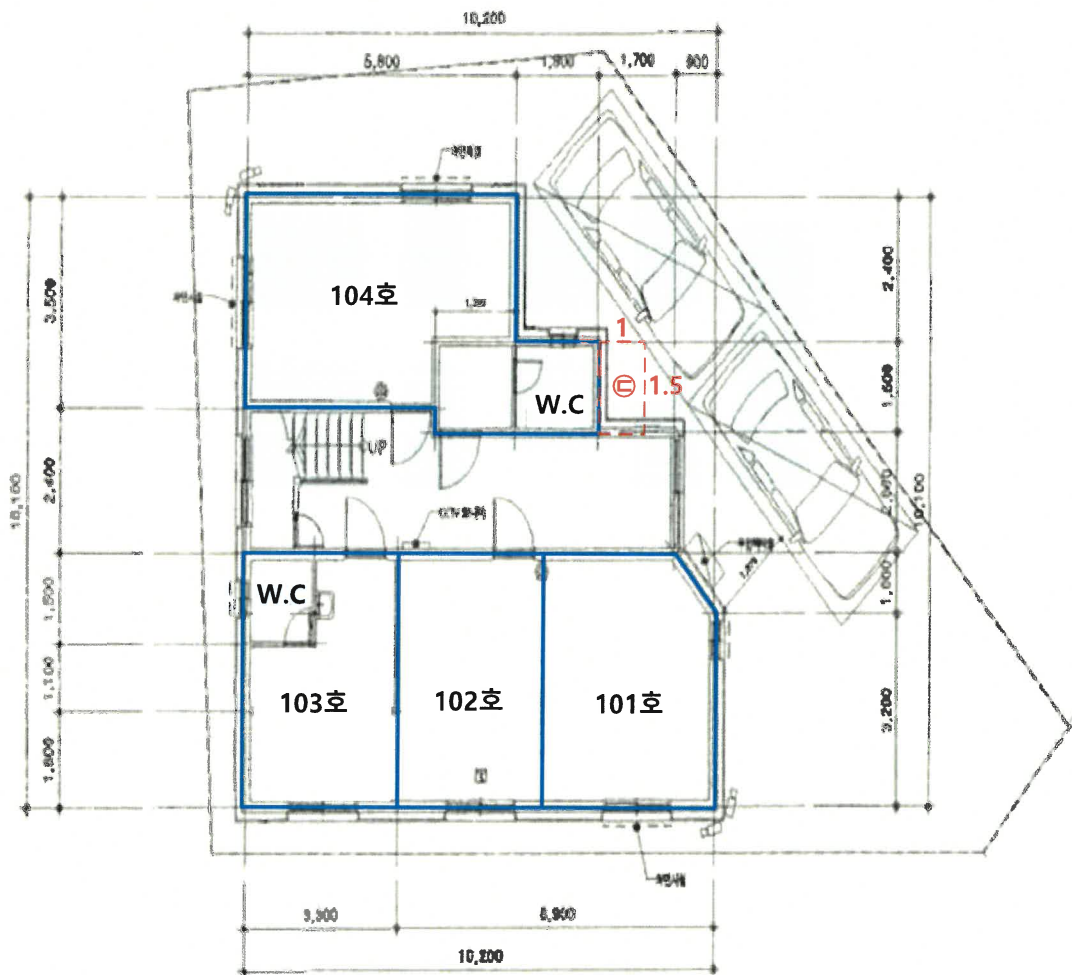
지 적 및 건물 개 황 도



건 물 개 황 도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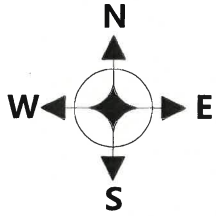
< 일련번호(다) 1층 >
공부상 면적 86.31㎡

< 제시 외 건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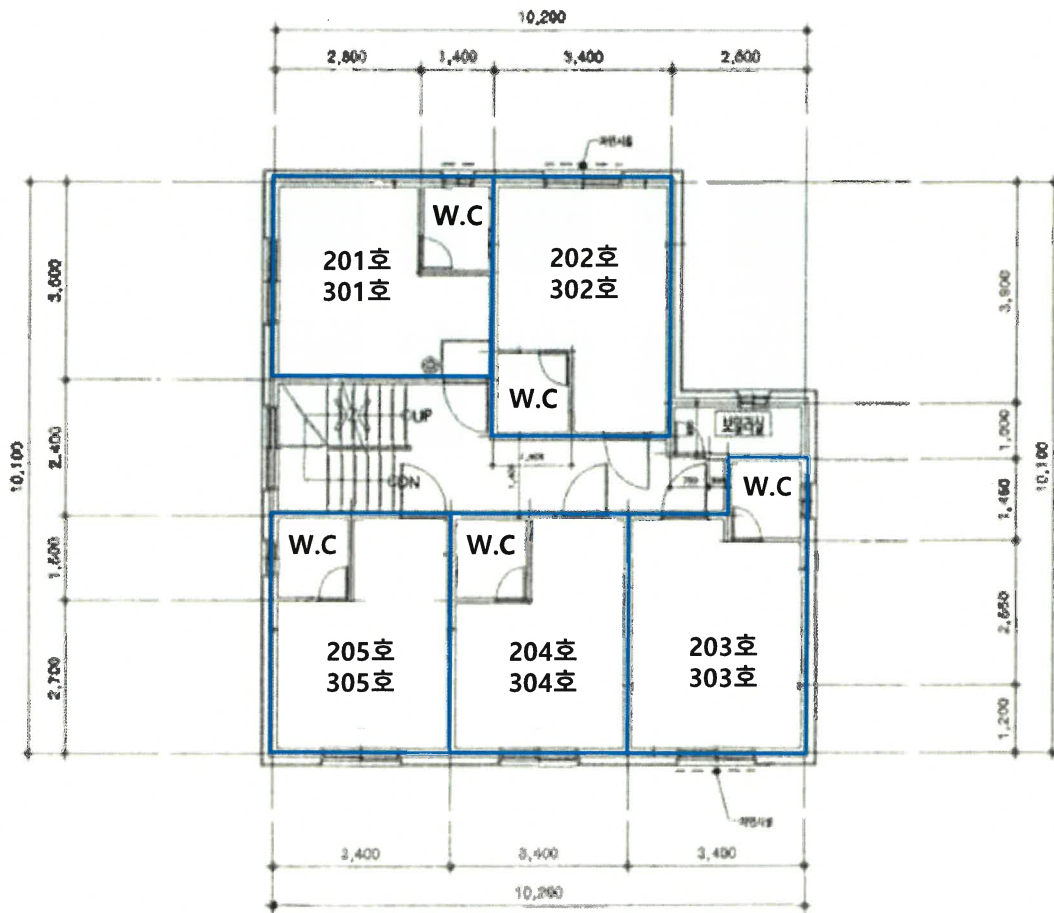
⊕ 판넬조 판넬지붕 보일러실 1층소재
1.5 x 1 = 약 1.5㎡

본건 배치도는 건축물 현황도 및 본건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도식화 하였으니 추후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바람.

건 물 개 황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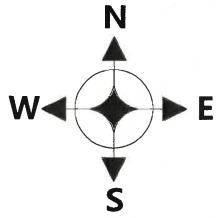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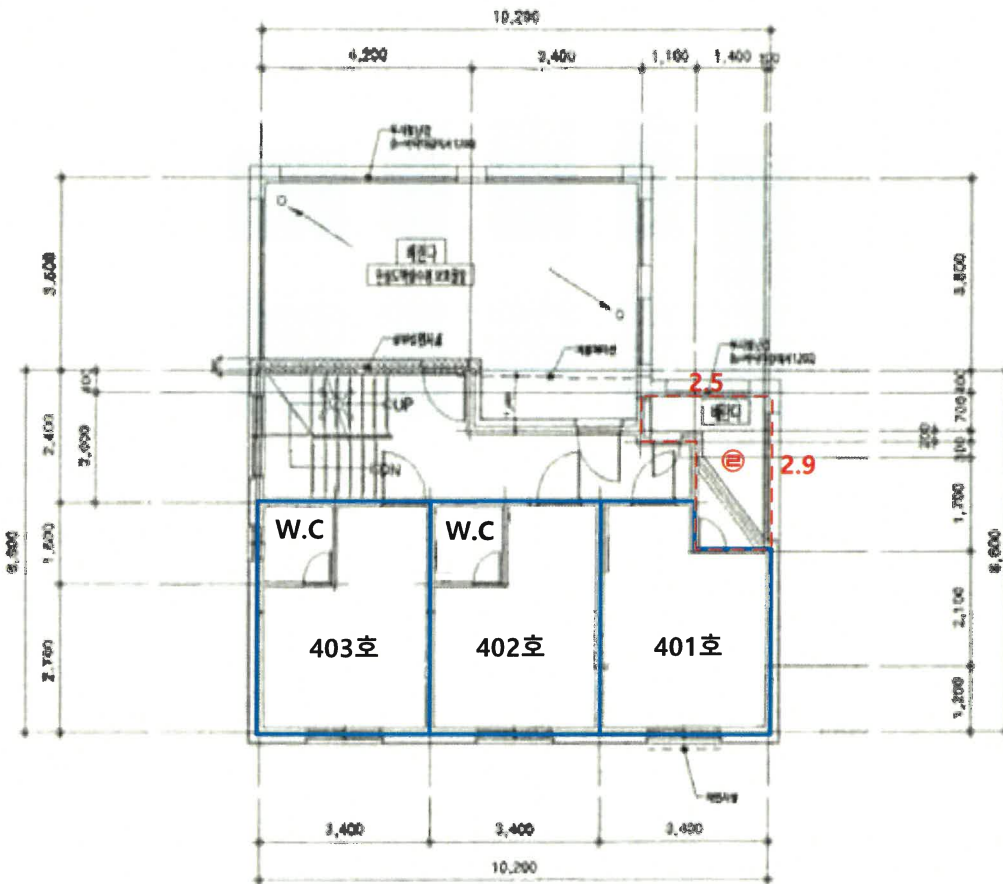
< 일련번호(다) 2~3층 >
공부상 면적 85.06㎡

본건 배치도는 건축물 현황도 및 본건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도식화 하였으니 추후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바람.

건물개황도



No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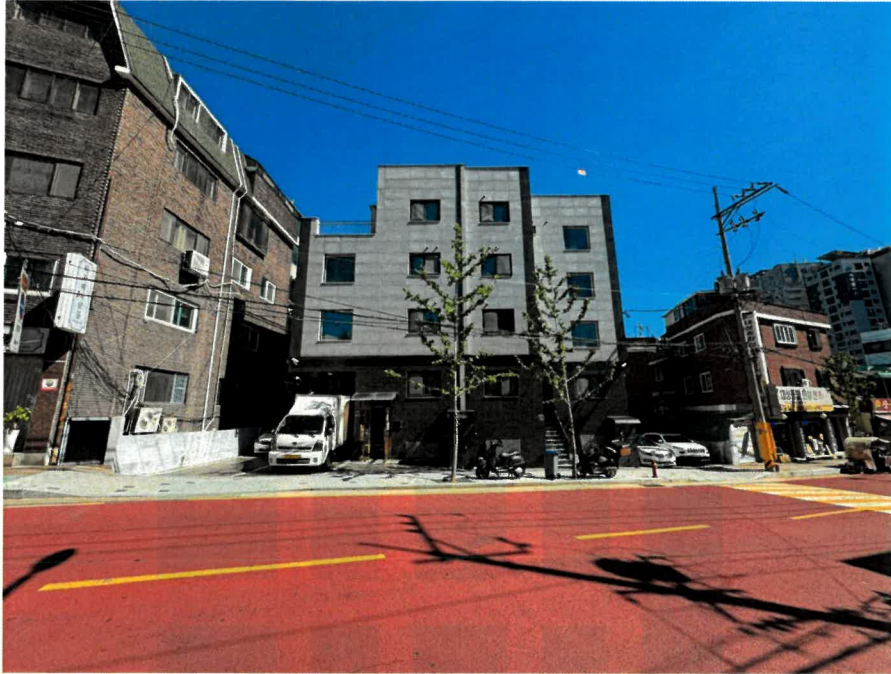
< 제시 외 건물 >

< 일련번호(다) 4층 >
공부상 면적 5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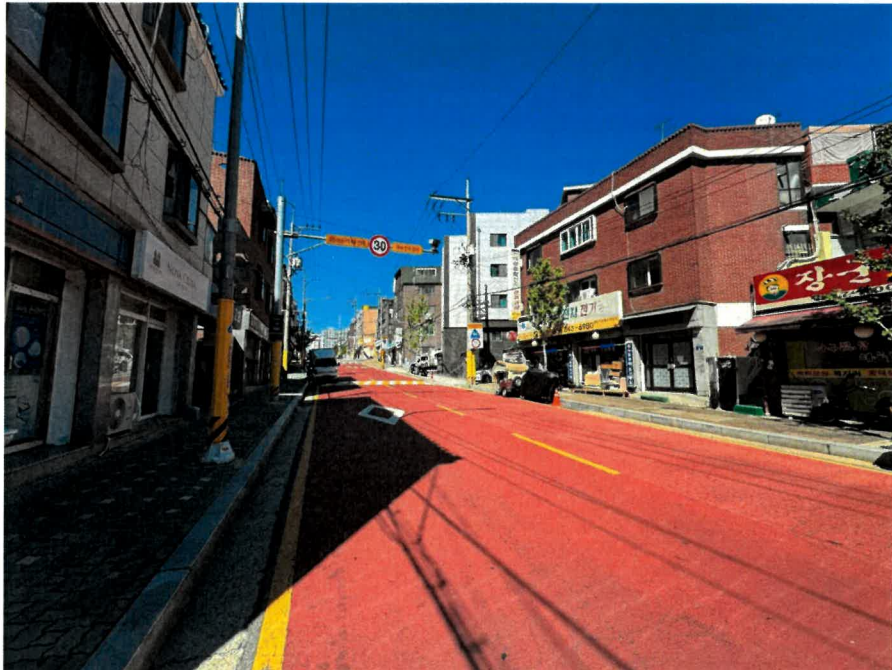
㊸ 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등 4층소재
2.5 x 2.9 = 약 7.25㎡

본건 배치도는 건축물 현황도 및 본건 평가 사례를 참고하여
도식화 하였으니 추후 경매 진행시 재확인 바람.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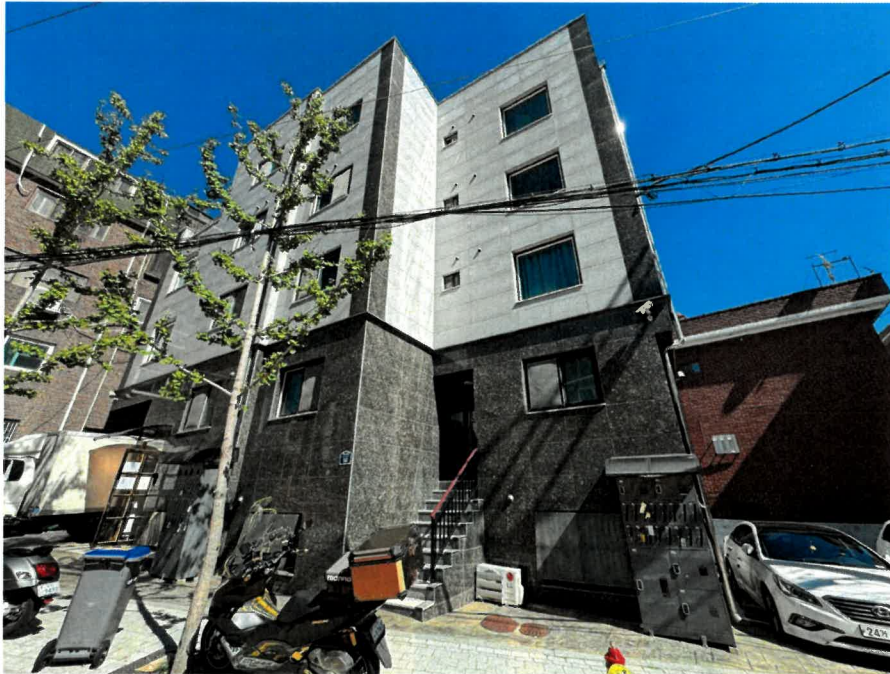


대상물건 일련번호 1), 2)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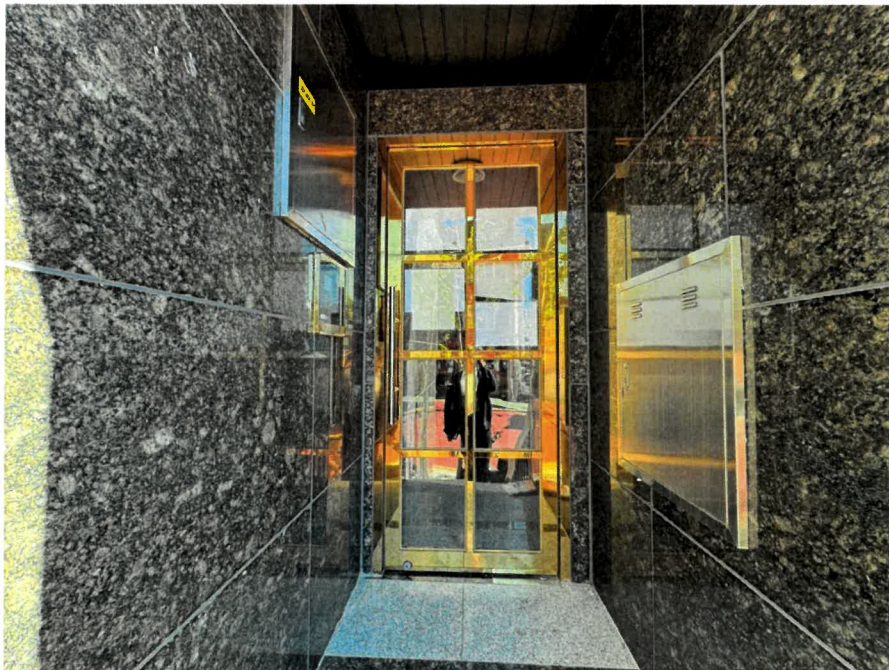


대상물건 일련번호 1), 2) 주위환경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일련번호 가) 전경



대상물건 일련번호 가) 공동 출입구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일련번호 가) 지1층 복도



대상물건 일련번호 가) 1층 복도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일련번호 가) 2층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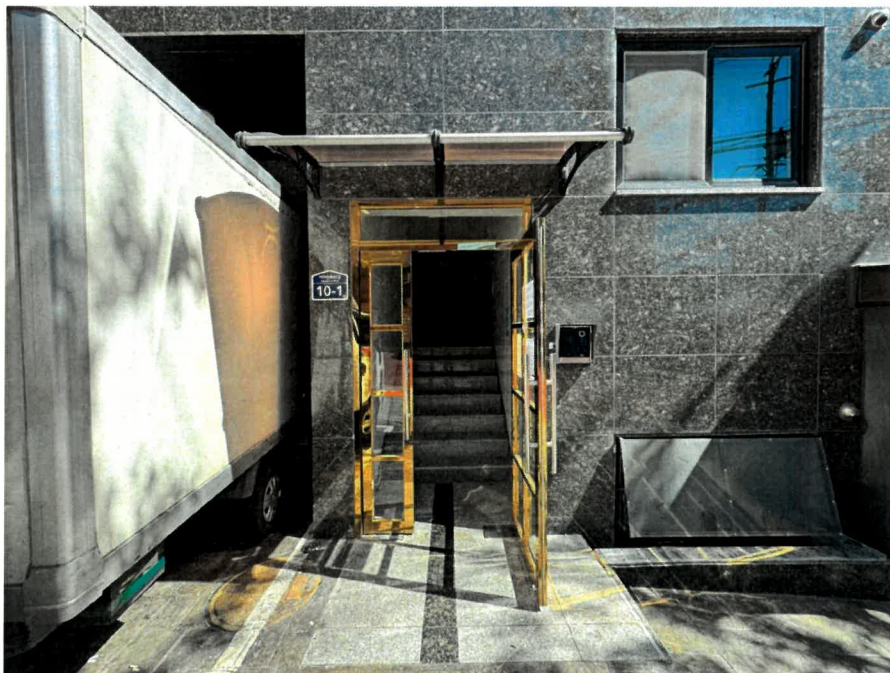


대상물건 일련번호 가) 3층 복도

사진용지



대상물건 일련번호 가) 4층 복도



대상물건 일련번호 나) 공동 출입구

사 진 용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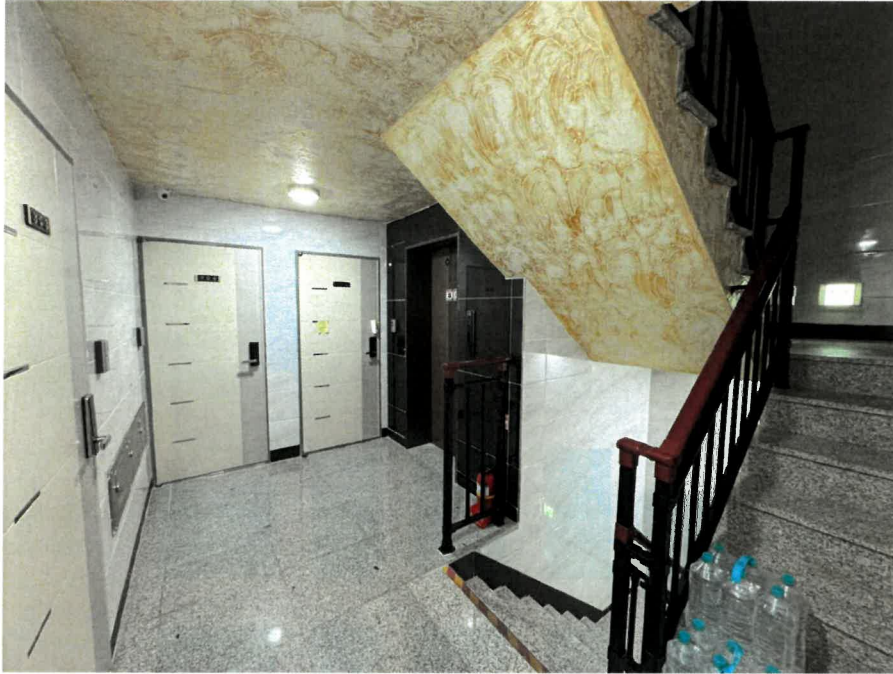


대상물건 일련번호 나) 지1층 복도



대상물건 일련번호 나) 1층 복도

사진용지



대상물건 일련번호 나) 2층 복도



대상물건 일련번호 나) 3층 복도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일련번호 나) 4층 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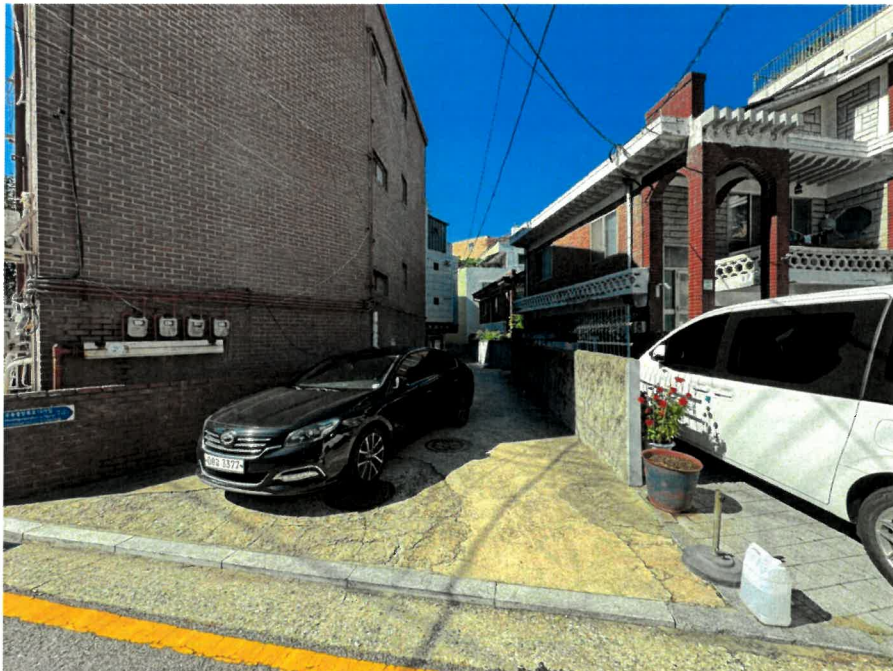


대상물건 일련번호 3) 전경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일련번호 3) 주위환경



대상물건 일련번호 3) 주위환경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일련번호 다) 공동 출입구



대상물건 일련번호 다) 1층 복도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일련번호 다) 2층 복도



대상물건 일련번호 다) 3층 복도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일련번호 다) 4층 복도



대상물건 일련번호 다) 옥탑층

사 진 용 지



제시외 물건
(기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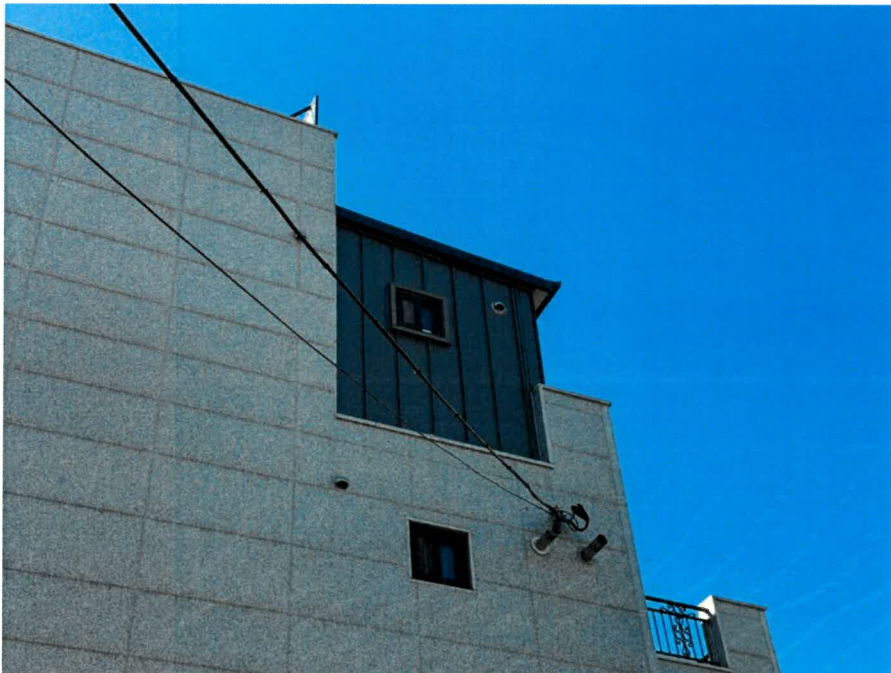


제시외 물건
(기호㉡)

사진용지



제시외 물건
(기호㉸)



제시외 물건
(기호㉸)